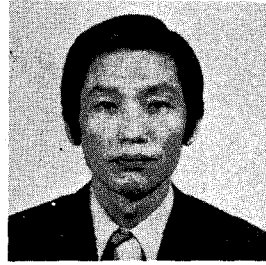


일본의 계육 거래규격의 형성과정과 현재의 계육 거래규격

현재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鶏肉의 도매 규격을 소개함에 있어 현 실정에 빠른 감도 있으나 과거 일본의 닭고기 소비량과 거래규정 설정과정과 우리나라 닭고기 소비추세를 비교할 때 별로 이르지 않다는 생각에서 본고를 소개한다.

목 차

- I. 鶏肉 거래규격 형성과정
 - 1. 계육 도매규격 형성과정
 - 2. 계육 소매규격 형성과정
- II. 현재 日本의 鶏肉의 거래규격
 - 1. 계육 도매 규격
 - 2. 계육 소매 규격



이 찬 모
(한국원종농원 상무)

I. 계육 거래 규격 형성 과정

그간 수 차례에 걸쳐 많은 학자, 업계 등에서 닭고기 유통에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쇠고기나 돼지고기 계란등과 같이 계육도 규격화 함으로써 유통이 원활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한다. 계육이 규격화 함에 따른 이점을 생각해 본다면 첫째 소비자로서 하여금 가치관의 기준을 제시하고, 둘째 소매업자의 공정한 판매를 기본으로 하도록 유도하며, 셋째 계육의 시장 용어와 중량구분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수급조절과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며, 넷째 소비자로서 하여금 1회에 기호에 맞게 소량의 닭고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의 무질서와 폭리를 막고, 생산자와 소비자

를 공히 보호하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단백질자원의 문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서적: "食鶏의 規格과 流通"

일본 農林省食鶏規格調査研究會
會長 駒井亨 著

1. 계육 도매 규격 형성 과정

1) 축산물 거래 규격 설정협의회 설치

1960년 이전의 계육의 매매는 각 주요 소비지에 따라 각기 독자의 시장용어 및 중량구분으로 판매가 되었다.

1960년에 들어 서면서 점차 브로일러의 사육수수가 늘어 (산란계 76.6%, 브로일러 23.4%) 연간 사육수수는 3천2백53만9천수로 이때 브로일러용 계종은 「로-그혼」이라는 일

대 잡종이 주가 되었으며, 전용 육계는 소수 사육자가 처음으로 있을 정도였다. 이때부터 서서히 브로일러 사육수수가 늘어남에 따라 계육의 규격화의 필요성을 느껴 농림성의 예산으로 축산물 거래 규격 설정 협의회를 설치하여 1961년 3월 처음으로 거래 규격의 전국 통일을 실현했다.

2) 계육규격의 거래 보급연구회 발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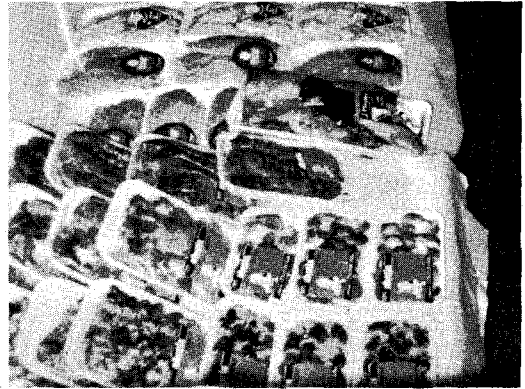
1961년 11월 11일 「계육 규격 거래 보급연구회」를 발족시켜 1963년까지 규격의 전국적 보급에 노력을 계속하였다. 즉 농림성이 「제란, 계육 거래 규격 해설」을 축산국 경제과에서 발행하여 1962년 11월 22일 각시도 현 직원, 생산자 대표, 중앙 관계자대표 등을 모아 제란과 계육 규격 거래 보급 강습회를 개최하고, 이후 계속하여 생산자단체직원, 하치장, 도매업자 등에게도 강습회를 열어 보급에 열중했다. 1961년에 설정한 계육거래규격의 특징을 보면(표 1 참조)

가. 시장용어가 통일되어 전국 어디서나 같이 사용되고,

나. 생체뿐 아니라 도체의 중량구분도 설정하여 도체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 진 점.

다. 생체와 도체의 품질 표준이 확립됐다는 점등이다.

「제란 계육 거래 규격 해설서」에는 규격 판매의 의의, 계육의 분류, 각계종의 특성, 도



△규격화된 계육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슈퍼마켓

체 각부위의 명칭, 닭의 체형, 계체 각부 구성, 규격 용어의 해설, 명칭및 중량구분, 품질의 설명, 계육 규격 방법, 취급의 주의점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 계육의 규격 판매에 관한 관련자의 인식을 높여 주었다. 1961년 설정한 규격은 전국에 통일된 규격으로서 이의 보급으로서 일본의 브로일러 산업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3) 1966년 계육판매규격조사연구회 발족

그러나 그후 브로일러 생산의 급증, 시장의 확대, 계종의 변천등으로 위의 규격을 개정하여 새로운 해체품의 규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1966년 11월 11일 계육 매매 규격 개정을 위하여 계육 매매 규격 조사연구회를 발

표 1 1961년도의 판매규격에 따른 계육의 명칭및 중량구분

명 칭	중 량 구 분(수당중량 : g)		비 고	
	생 체	도 체		
육 계	특 대	1,900이상	1,800	생후 4개월 미만의 암수
	대	1,500~1,900	1,400~1,800	
	중	1,100~1,500	1,000~1,400	
	소	900~1,100	800~1,000	
	특 소	700~900	600~800	
세 미	1,100이상	1,000이상		생후 4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암수
산란계	특 대	1,900이상	1,800이상	생후 6개월 이상의 암놈
	대	1,500~1,900	1,400~1,800	
	중	1,300~1,500	1,200~1,400	
	소	1,300미만	1,200미만	
산란계 숫놈	1,500이상	1,400이상		생후 6개월 이상의 숫놈

표 2 1967년도 개정된 판매규격에 따른 계육의 명칭 및 중량구분

명칭	중량구분(수당중량:g)		비고	
	도체	생체		
육계	특대	1,900이상	2,100이상	원칙적으로 3개월 미만의 닭의 암수로 함
	대	1,700~1,900	1,900~2,100	
	대소	1,500~1,700	1,700~1,900	
	중	1,300~1,500	1,450~1,700	
	중소	1,100~1,300	1,200~1,450	
	소	900~1,100	1,000~1,200	
소소	600~900	800~1,000		
세미				
산란계	대	1,800이상	2,000이상	원칙적으로 5개월 이상의 닭의 암놈으로 함
	중	1,500~1,800	1,700~2,000	
	소	1,500미만	1,700미만	
산란계숫놈	중량구분 없음		5개월 이상의 숫놈	

족했다. 이 연구회는 1961년의 명칭, 중량구분 및 품질표준개정 검토, 해체품, 냉동품의 규격 설정의 연구 검토등을 위해 수회 회합을 가져 1967년 3월 20일 이 연구회의 개정안이 농림성 축산국장에 올려져 계육매매 규격의 개정이 1967년 5월 4일 결정되었다.

이때 개정된 "계육매매규격"에 대해서는 계육의 명칭, 중량구분이 변경되고, 품질표준이 브로일러 전용종 중심으로 바뀌어 해체품의 명칭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1967년 개정에 있어서는 해체품의 중량구분등은 설정하지 않고, 명칭의 통일에만 주력하고 또 냉동품은 규격 설정을 하지 않은 것이 이후의 연구 문제로 남아 있었다.

1967년 5월 개정의 매매 규격에서 특기할 사항은

가. 규격(특히 중량구분)이 종래의 생체 중심에서 도체 중심으로 변한 점.

나. 브로일러의 월령이 종래 4개월령미만에서 3개월령 미만으로 변한 점.

다. 약제의 자유(생후 4개월 미만 계의 자유를 말함)은 유통 수량이 적어 삭제한 점.

라. 산란계의 웅(雄)계와 자(雌)계의 월령을 종래 6개월령 이상에서 5개월령 이상으로 바꾼 점.

마. 해체품의 명칭을 설정한 점.

표 2 참조 : <1967년 개정의 매매 규격에 따른 계육의 명칭과 중량 구분> 1967년 개정된 내용과 1961년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브로일러의 중량의 세분화(도체에 대하여 200그램의 차)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것은 브로일러 산업의 발전에 따라 브로일러의 유통량 증대, 규격에 따른 수요의 다양화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특히 중량 구분을 細분화 한 것은 각 중량 구분별로 시장 가격을 성립되게 함으로써 각 중량 구분에 상당하는 브로일러의 수급상태를 파악하는 일에 큰 이점이 되었다.

브로일러의 월령을 4개월령에서 3개월령 미만으로 한 것은 육계 전용종의 보급에 따라 발육이 신속하여 출하일령이 빨라짐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4) 계육의 규격매매 실시 준비위원회 발족

위에서 서술한 1967년도 개정규격은 해체품의 명칭만이라도 설정했으나, 동결품의 규격 설정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농림성은 1968년 5월 해체품과 냉동품의 규격 설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각 관련자들로 하여금 1967년 개정규격의 재검토, 해체품, 냉동품 규격의 조사 연구를 시켰다.



그 결과 해체품과 냉동품의 규격에 대해서 1969년 5월 개최한 계육매매규격 설정 조사연구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축산국장에 보고되어 개정했다. 이 해에 개정된 계육매매 규격에는 생체와 도체의 명칭과 중량은 종래 1967년에 결정된 것으로 하고, 생체와 도체의 품질 표준을 일부 개정하여 해체품의 종류 및 중량 구분, 동결품의 규격을 설정하였다. 1969년의 계육매매규격은 해체품의 종류 명칭 및 중량구분이 설정되고, 특히 내장을 제거한 도체된 닭은 1형, 2형, 3형의 3종류로 분리, 각기 중량의 구분을 설정했다.

날개, 가슴, 다리는 각기 3종류로 하고, 다리는 중량구분을 해서 이를 정육 1형, 2형의 2종류로 나누어진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해체품의 규격 설정에 따라 해체품의 유통이 원활하게 되고, 특히 생산지의 도계공장이 제조한 해체품을 위와 같은 형태로 유통함으로써 계육유통이 합리화하고 소비가 대폭 신장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되었다.

이때 동결품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정의가 내려져 표준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생선품의 종류, 명칭, 중량구분을 동결품에 준용하여 동결품의 유통이 원활해지고, 계육시장의 발달로 유통량의 증대에 큰 역할을 했다.

5) 계육 매매 규격 개선안

그러나 해체품의 유통이 대량화 하는 반면

도체의 중량구분과 가슴의 중량 구분, 다리의 중량구분의 세분화 등이 필요한 점과 또 해체품의 종류, 명칭 및 새로 설정하는 소매 규격과의 조정을 위하여 또한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

수요의 증대에 따른 계육의 생산, 유통 현상에 부응하여 또 장래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969년 개정의 매매 규격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1973년 5월 농림성 축산국장의 위촉에 의하여 “계육매매규격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위원회는 종래의 일본 계육협회나 전농등 외에 소비자포장의 보급, 해체품 유통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산지가격 도계 공장의 대표자, 브로일러 유통을 담당하고 브로일러 소비 증대에 지대한 역할을 한 실력자를 총망라하여 위원회를 조직 1973년 5월 9일까지 5회에 걸쳐 열심히 토의를 한 결과 “계육 매매 규격 개정안”을 작성, 1974년 1월 10일 부로 축산국장이 결정, 3월 개정 규격 보급 강습회를 한후 동년 4월 1일부로 이 개정안을 실시 했다.

생체의 중량구분은 종래의 7구분에서 특대, 대, 중, 소등 4구분으로 고치고 도체의 중량구분은 종래와 같이 사용하고 생체와 도체의 품질 표준은 다소 변경이 있었다. 도체하여 내장을 제거한 닭은 새로 품질 표준을 정하고, 종류와 중량 구분도 일부 변경했다.

해체품은 새로 도체(내장이 있는 상태)의 종류, 명칭 및 중량 구분을 설정하여 종래의 부분육과 뼈가 붙어있는 계육을 개칭했고, 날개, 가슴 및 다리에 대해서는 종류, 명칭, 중량 구분을 개정 신설했다.

정육에 대해서는 종류와 명칭을 변경했다. 동결품에 대해서도 약간 수정을 하여 중량구분의 기준을 동결품의 중심 온도가 -15°C 에 달하는 시점으로 했다. 또 3개월 미만 사육한 닭을 약계(若鷄)라 하고,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사육한 육계를 비육계라는 새로운 명칭을 설정했다. (계속)